

제25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6. 29.

임실군의회회장

### 1. 개정이유

종량제 확대(단독주택 등)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종량제 방식도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규격 및 kg당 수수료 부과금액을 재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납부칩” 및 “납부칩 보관함” 정의 신설(제2조)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 : 별표 3

- 일반주택 3ℓ판매가격 및 kg당 40원 신설
- 음식점과 공동주택 처리수수료 동일 적용
-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수수료 별도 적용

다.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삭제(제18조제2항)

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개정

- 제2조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6조

###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동법 제68조 과태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5. 5. 8. ~ 6. 8.)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 4) 관련법령 발췌문

##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단,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를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전용수거용기를 다량배출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필증을”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을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5호라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개선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 과태료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 적용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폐기물관리법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          |       |          |
|        |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       | 20    | 30       |
|        |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 20       | 30    | 50       |
|        |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 70    | 100      |
|        |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          |       |          |
|        |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0       | 50    | 100      |
|        |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       | 50    | 100      |
|        |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30       | 40    | 60       |
|        |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 60       | 80    | 100      |
|        |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0       | 30    | 50       |
|        |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00      | 300   | 500      |

<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에 의한 수수료<제9조제6항>

1. 부피형 납부필증(납부칩)

| 구 분          | 용기규격 | 판매 수수료(원) |        |       |
|--------------|------|-----------|--------|-------|
|              |      | 판매가격      | 공급가격   | 판매이윤  |
| 일반주택         | 3ℓ   | 100       | 90     | 10    |
| 공동주택,<br>음식점 | 60ℓ  | 1,800     | 1,620  | 180   |
|              | 120ℓ | 3,600     | 3,240  | 360   |
| 다량배출<br>사업장  | 60ℓ  | 6,600     | 5,940  | 660   |
|              | 120ℓ | 13,200    | 11,880 | 1,320 |

※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무게형 수수료 : 1kg당 40원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            |
|                         | ⑤ 주소(사업장)<br>(전화번호: )          |                |                |              |                |            |
| ⑥ 사업장 규모                |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                | 명              |              |                |            |
|                         | [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m <sup>2</sup> |              |                |            |
|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m <sup>2</sup> |              |                |            |
|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m <sup>2</sup> |              |                |            |
| [ ] 호텔·콘도: 객실 수         |                                | 실              |                |              |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              |                |            |
|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 kg/월 (1일 kg)   |                |              |                |            |
| ⑧ 발생 억제 계획              |                                |                |                |              |                |            |
| ⑨ 자가처리계획                |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                |                |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                |            |
|                         | 처리방법                           | 처리능력 (kg/일)    | 설치 신고일         | 처리량 (kg/일)   | 부산물 발생량 (kg/일) | 처리방법       |
| ⑫ 자가재활용계획               | 재활용량(kg/월)                     |                | 재활용방법          |              | 재활용장소          |            |
|                         | 위탁재활용량 (kg/일)                  | 위탁계약 비용 (원/kg) | 위탁업소명          | 업종           | 재활용방법          | 위탁업소 주소·전화 |
| ⑬ 위탁재활용계획               |                                |                |                |              |                |            |
|                         |                                |                |                |              |                |            |
| ⑭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⑮ 변경사유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0000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   |        |
|------|---|--------|
| 첨부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br>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br>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br>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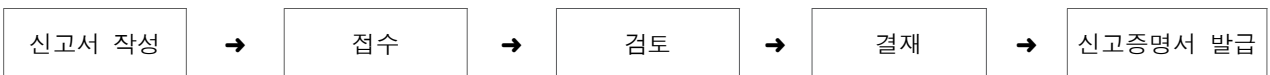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                        |   |
|------------------------|---|
| 집단급식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br>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br>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
| 음식점<br>호텔·콘도 등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br>소형복합찬기 이용<br>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 대규모점포                  |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br>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
| 농수산물도매시장<br>(공판장·유통센터) |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br>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
| 공통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⑯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 커피·주류의 조리·판매 전문점 및 빵·떡·과자 제조 판매 전문점은 제외한다.</p> <p>4. ~ 6. (생   략)</p> <p>&lt;신   설&gt;</p> | <p>제2조(정의) -----<br/>-----.</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 <p>7.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p> |

<신 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수”라 한다)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⑤ -----  
-----.

1. (현행과 같음)
- 2.-----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  
-----

3. (생략)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⑥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공급)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전용수거용기를 다량배출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③ (생략)  
⑤ (생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법 제68조-----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증명서를-----.
2. -----  
-----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 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삭제>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

1. -----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선기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제작·공급 또는 판매하는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삭 제>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
| <p>「별표 2」</p> <p><b>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b></p>   | <p>「별표 2」</p> <p><b>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b></p>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적용법</th> <th style="width: 85%;">부과항목</th> </tr> </thead> </table>  | 적용법  | 부과항목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적용법</th> <th style="width: 85%;">부과항목</th> </tr> </thead> </table>  | 적용법    | 부과항목   |
| 적용법   | 부과항목   |  |   |        |  |
| 적용법   | 부과항목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폐기물관리법</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자</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경우(법 제15조 관련)</p> <p style="margin-left: 20px;">가.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3조관련)</p> </td> </tr> </tbody> </table> | 폐기물관리법   | <p>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자</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경우(법 제15조 관련)</p> <p style="margin-left: 20px;">가.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3조관련)</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폐기물관리법</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p> <p style="margin-left: 20px;">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td> </tr> </tbody> </table> | 폐기물관리법 | <p>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p> <p style="margin-left: 20px;">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
| 폐기물관리법  | <p>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자</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경우(법 제15조 관련)</p> <p style="margin-left: 20px;">가.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3조관련)</p>   |  |   |        |  |
| 폐기물관리법  | <p>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p> <p style="margin-left: 20px;">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b>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수수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용기규격</th> <th colspan="3">판매 수수료(원)</th> </tr> <tr> <th>판매가격</th> <th>공급가격</th> <th>판매이윤</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동<b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6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240</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음식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9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8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0</td> </tr> </tbody> </table> <p>※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p> | 구 분   | 용기규격      | 판매 수수료(원) |           |  | 판매가격 | 공급가격 | 판매이윤 | 공동<br>주택 | 60ℓ | 1,800 | 1,620 | 180 | 120ℓ | 3,600 | 3,240 | 360 | 음식점 | 60ℓ | 6,600 | 5,940 | 660 | 120ℓ | 13,200 | 11,880 | 1,320 |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b>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에 의한 수수료</b></p> <p><b>1. 부피형 납부필증(납부칩)</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용기규격</th> <th colspan="3">판매 수수료(원)</th> </tr> <tr> <th>판매가격</th> <th>공급가격</th> <th>판매이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b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3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동<br/>주택<br/>음식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240</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다량<br/>배출<br/>사업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6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9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8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0</td> </tr> </tbody> </table> <p>※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p> <p><b>2. 무게형 수수료 : 1kg당 40원</b></p> | 구 분 | 용기규격 | 판매 수수료(원) |  |  | 판매가격 | 공급가격 | 판매이윤 | 일반<br>주택 | 3ℓ | 100 | 90 | 10 | 공동<br>주택<br>음식점 | 60ℓ | 1,800 | 1,620 | 180 | 120ℓ | 3,600 | 3,240 | 360 | 다량<br>배출<br>사업장 | 60ℓ | 6,600 | 5,940 | 660 | 120ℓ | 13,200 | 11,880 | 1,320 |
| 구 분  |       |           | 용기규격      | 판매 수수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가격  | 공급가격      |           | 판매이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br>주택   | 60ℓ   | 1,800     | 1,620     |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ℓ  | 3,600     | 3,240     | 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점  | 60ℓ   | 6,600     | 5,940     | 6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ℓ  | 13,200    | 11,880    | 1,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용기규격  | 판매 수수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가격      | 공급가격      | 판매이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br>주택   | 3ℓ    | 100       | 90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br>주택<br>음식점  | 60ℓ   | 1,800     | 1,620     |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ℓ  | 3,600     | 3,240     | 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량<br>배출<br>사업장  | 60ℓ   | 6,600     | 5,940     | 6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ℓ  | 13,200    | 11,880    | 1,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작성자

-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